

## 속초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|    |     |
|----|-----|
| 의안 | .   |
| 번호 | 152 |

제출년월일 : 1993. 5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### 1. 제 안 사 유

-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여건 변화를 수용하고, 지방공기업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상위 법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### 2 주 요 골 자

- 조례조항중 "지방공기업" 을 "지방직영기업" 으로 개정 (안 제1조, 제6조 참조)

### 3. 참 고 사 항

- 강원 법무 02124 ~ 98 ('93.3.24) 호로 정비안 시달 ————— 별            청
- 시정조정위원회 부의 ————— '93. 4. 29

## 속초시 조례 제 호

### 속초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

속초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"지방공기업법제31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운영에" 를 "지방공기업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 운영에" 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지방직영기업의 투자사업비
2. 지방직영기업의 고정부채상환금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| 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행 | 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제1조(목적)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1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고정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설치운영 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  | 제1조(목적) - - - 지방공기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 운영에 - - - - - |   |
| 제6조(기금의 운영) ① ( 생 략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제6조(기금의 운영) ① ( 현행과 같음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② - - - -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1. <u>지방공기업의 투자 사업비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1. <u>지방직영기업의 투자사업비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2. <u>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상환금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2. <u>지방직영기업의 고정부채상환금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3. ( 생 략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3. ( 현행과 같음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